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제3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8, 12, 18,

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 167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안 자 : 노식래 의원 대표발의(찬성자 김재형 의원 외 15명)

나. 제 안 일 : 2018. 10. 16.

다. 회 부 일 : 2018. 10. 29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의원의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에 따라 예산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함(안 제20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타사항: 해당사항 없음.

※ 이 조례안은 권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(의안번호 제15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○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)의 예·결산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임.

2 예산정책위원회 신설(안 제20조의2)

 안 제20조의2는 의원의 예·결산 심의와 의회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되,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제20조의2(예산정책위원회) ① 의회의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· 운영한다.

-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예산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의원의 내실 있는 예·결산 심의와 예산정책 관련 연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입법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 현행 정책위원회와 일부 기능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정책위원회의 신설여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함께 두 위원회 간 명확한 역할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약 45조에 달하는 서울시의 예·결산 심의와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, 향후 예·결산 심의과정 내실화와 예산정책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, 그 입법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현행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위원회 간 일부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, 예산정책위원회를 신규 설치·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.